금 일천칠백칠십구억사백칠십칠만(177,904,770,000)원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신항만 주식회사 인수금융 리파이낸싱 대출

대출계약서

와스카 유한회사 - 차주 -

에스비케이와스카사모투자 합자회사 - 대주 -

2023년 2월 3일

# 목 차

제	1	조		정의		6
		제	1	항	용어의 정의	6
		제	2	항	해석 및 참조	14
제	2	조		대출9	약정	15
		제	1	항	대출약정	15
		제	2	항	대출금의 사용 목적	15
제	3	조		인출.		15
		제	1	항	인출 절차	15
		제	2	항	인출요청의 취소 불가능	16
		제	3	항	인출선행조건	16
		제	4	항	인출후행조건	17
제	4	조		이자	및 연체이자	17
		제	1	항	이자율	17
		제	2	항	이자지급	17
		제	3	항	연체이자	17
		제	4	항	이자, 연체이자의 계산	17
제	5	조		상환	및 조기 상환	18
		제	1	항	상환	18
		제	2	항	임의 조기상환	18
		제	3	항	의무 조기상환	19
		제	4	항	조기상환 관련 제한 및 대출약정금의 취소	21
제	6	조		수수:	료와 비용	21
		제	1	항	비용	21
					집행비용	

제 3	항	계약 관련 세금	22
제 7 조	지급.		22
제 1	항	차주의 지급	22
		변제의 충당	
		영업일	
제 8 조	계좌	의 운영	<b>2</b> 3
제 1	항	배당금등수령계좌	24
		운영계좌	
제 9 조	공제 <sup>.</sup>	금지, 법률의 변경과 사정변경	25
제 1	항	공제금지	25
		위법	
1		추가비용	
제 10 조	담보.		27
제 1	항	담보계약	27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제 3	항	사채근질권설정계약	27
제 4	항	예금채권근질권설정계약	28
제 5	항	조건부 대여약정	28
제 11 조	진술	및 보장	28
제 1 :	항	법인격 및 자격	28
제 2	항	법적 능력 및 권한	29
제 3	항	차입의 승인	29
제 4	항	인허가	29
제 5	항	계약의 구속력; 법과 기타 약정의 준수	29
제 6	항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의 부존재	29
제 7	항	법령의 준수 등	29
제 8 :	항	법적 조치	30

제 9 항	채무의 부존재	30
제 10 항	담보	30
제 11 항	소송	30
제 12 항	정보의 정확성	30
제 13 항	부도사유의 부재	30
제 14 항	재무제표	30
제 15 항	기존 거래계약의 존속 등	31
제 16 항	지분보유 등	31
제 12 조 적극	<sup>구</sup> 적 준수사항	31
제 1 항	재무제표 등의 제출 의무	32
제 2 항	제세공과금	
제 3 항	인허가의 유지 및 관련 법령 준수	
제 4 항	법인격의 유지	32
제 5 항	통지	33
제 6 항	추가 서류 및 조치	
제 7 항	담보계약 및 담보권의 유지	
제 8 항	적절한 장부관리 및 열람인용	
제 9 항	대출금 사용목적의 준수	
제 10 항	진술 및 보장사항의 정확성 유지	
제 11 항	대상회사 준수사항	
제 12 항	대상회사 주식양도 관련	34
제 13 조 소극	<sup>무</sup> 적 준수사항	34
	금융부채 부담금지	
	담보제공의 금지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	신용공여의 금지	
제 6 항	사업 변경	
제 7 항	정관 변경 등	
제 8 항	유상증자 금지	
제 9 항	대상사채 및 대상주식의 처분	
제 10 항		
제 11 항	투자	37

	제 12	항	주요계약	37
	제 13	항	경영권 변동	37
제 1	4 조	기한	의 이익 상실	38
	제 1	핤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38
	제 2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의 효과	
제 1:	5 조	손해기	매상	41
	제 1	항	분쟁 등 관련 손해배상	41
			금융계약 위반 관련 손해배상	
제 1	6 조	당사	자의 변경	42
	제 1	항	이 계약의 당사자	42
	제 2	항	차주의 변경	42
	제 3	항	대주의 변경	42
제 1	7 조	기타	조항	42
	제 1	핫	기간	42
			완전한 합의	
			수정	
			포기; 누적적 권리	
			비밀유지	
	•	-	일부무효 등	
			통지	
			상계	
	제 9		준거법 및 관할법원	
	제 10		부본	
별첨	1	분할	상환일정표	
별첨	2	인출.	요청서	
별첨			선행조건 서류	
별첨	4	인술.	후행조건 서류	

# 대출계약서

이 대출계약(이하 "이 계약")은 아래 기재된 당사자들 사이에서 2023년 2월 3일(이하 "이 계약 체결일") 체결되었다.

차 주 와스카 유한회사 (이하 "차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6(을지로2가)

대 주 에스비케이와스카사모투자 합자회사 (이하 "대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2길 37-2, 3층(소격동)

## 전 문

차주는 이 계약에 명시된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합계 금 일천칠백칠십구억사백칠십칠만(177,904,77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원을 대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고, 대주는 이 계약의 제 조건에 따라 차주에게 이를 대출하고자 한다.

이에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제1조 정의

#### 제 1 항 용어의 정의

문맥상 명백하게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 1. "경영권 변동"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가) 차주와 관련하여, 스폰서가 차주의 의결권 있는 총지분의 일백퍼센트 (100%)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 및 의결권을 유효,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
  - (나) 대상회사와 관련하여, (i) 이 계약 체결일 현재 대상회사의 주주인 차주,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및/또는 PSA 가 합하여 대상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



행주식총수의 오십퍼센트(50%) 이상에 해당하는 보유 주식을 매각, 양도, 기타 처분하는 경우 또는 (ii) 차주,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및/또는 PSA 가지명 또는 추천하여 선임된 대상회사의 이사가 대상회사 전체 이사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2. **"금융계약"**이라 함은 이 계약, 담보계약, 조건부 대여약정 및 기타 차주와 대주가 합의하여 금융계약으로 하기로 한 계약이나 서류를 의미한다.
- 3. "금융부채"라 함은, 어느 자(者)와 관련하여, 아래 열거한 채무를 의미한다.
  - (가) 차입금 또는 차입의 효과를 가지는 여하한 유형의 예치금 또는 선지급금 과 관련된 모든 채무(일상적인 영업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고객에 의한 예치금 또는 선지급금은 제외함)
  - (나) 사채, 어음, 증권 또는 유사한 성격의 증서에 표시된 그의 모든 채무(일 상적인 영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관련하여 발행된 어음 또 는 이와 유사한 증서에 표시된 채무는 제외함)
  - (다) 차입의 효과를 가지고 이자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채무
  - (라) 그 자(者)의 자산으로 담보되는 다른 자(者)의 모든 금융부채
  - (마) 차입의 성격을 가지는 그 자(者)의 자산과 관련한 조건부 매각 또는 기 타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상의 채무
  - (바) 통상적인 지급시기로부터 구십(90)일을 초과하여 지급이 이연된 자산의 매매대금 또는 용역대가와 관련된 모든 채무
  - (사) 다른 자(者)의 금융부채와 관련한 당해 자(者)의 보증채무
  - (아) 당해 자(者)의 대차대조표상 리스로 분류되어 회계처리되어야 하는 채무
  - (자)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신용장, Standby L/C 또는 기타 증서 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
  - (차) 매출채권의 매각과 관련된 채무(소구권없는 매각은 제외)

- (카) 차입의 효과를 가지는 선도매매를 포함한 기타 다른 거래에서 발생한 금 액과 관련된 채무
- (타) 헤지목적의 파생거래와 관련된 채무(이러한 채무는 시가평가한 당해 파생거래의 가치의 범위로 한정됨)
- 4. "기존 거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총칭한다.
  - (가) 주주간계약
  - (나) 사채인수계약
  - (다) 조건부 대여약정
  - (라) TSA 계약
  - (마) 차주,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부산항만공사 및 대상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4년 3월 10일자 '신항 2단계 2차 컨테이너부두 임대차계약 권리의무 포괄승계 및 연대보증에 관한 계약서' 및 차주,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PSA, 부산항만공사 및 대상회사 사이에 2016년 4월에 체결된 '계약상지 위 양수도 계약서'(그 후 수정 또는 변경된 계약을 모두 포함한다)
- 5. "기존 대출계약"이라 함은 2016년 5월 12일자로 차주와 대리금융기관으로서 주식회사 하나은행, Tranche A 대주로서 주식회사 하나은행, 하나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부산시중앙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Tranche B 대주로서 주식회사 하나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사이에 체결된 대출계약(그 후 수정 또는 변경된 계약을 모두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 6. "기존 조건부 대여약정"이라 함은 대주로서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PSA 및 차주 사이에 2019년 1월 31일자로 체결된 Amended and Restated Conditional Loan Agreement 를 의미한다.
- 7. "기존 차입금"이라 함은 기존 대출계약에 따라 차주가 차입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원리금 기타 모든 금전채무를 의미한다.
- 8.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라 함은 제14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사유를 의미하며, "잠재적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라 함은 통지나 시간의 경과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유를 의미한다.

- 9. "담보권"이라 함은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권, 유치권, 우선특권이나 기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실질적으로 이와 동일한 담보적 효력을 가지는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 금융리스계약 등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 10. "담보계약"이라 함은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사채근질권설정계약, 예금채권근질 권설정계약, 조건부 대여약정, 기타 제10조에 따라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 하여 체결되는 계약 및 차주와 대주가 합의하여 담보계약으로 하기로 한 계약 을 의미한다.
- 11. "담보권자"라 함은 대주를 의미한다.
- 12. "담보물"이라 함은 담보계약에 따라서 담보권자를 위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 나 설정하고자 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재산 또는 재산권을 의미한다.
- 13. "대상사채"라 함은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대상회사가 차주에게 발행한 액면총 액 오백억(50,000,000,000)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2016년 5월 11일자 변경계약에 따라 그 발행조건이 변경된 것을 말한다.
- 14. "대상주식"이라 함은 이 계약 체결일 현재 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발행의 우선주식 총 1,999,999주(지분비율은 50%-1주)를 말한다.
- 15. **"대상회사"**라 함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454(성북동)에 그 등기된 본 점을 두고 있는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신항만 주식회사를 말한다.
- 16. "대출금" 또는 "본건 대출금"이라 함은 대주가 이 계약에 따라 차주에게 대출 한 후 상환되지 않고 있는 원금총액을 의미한다.
- 17. "대출만기일"이라 함은 인출일로부터 삼십구(39)개월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단, 해당일이 영업일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을 의미한다.
- 18. "대출약정금"이라 함은 대주가 차주에게 대출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서 금 일 천칠백칠십구억사백칠십칠만(177,904,770,000)원을 의미한다.
- 19. "배당금등수렁계좌"라 함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개설되는 계좌를 의미한다.



- 20. "본건 터미널"이라 함은 부산 신항 2단계 2차 컨테이너부두를 의미한다.
- 21. "부도사유"라 함은 어느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 (가) 해당 회사가 그 자신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 행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또는 주채권은행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때 또는 그와 유사한 절차(금융기관간의 자율협약 또는 그와 유사한 효력을 가지는 협약 체결은 제외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이러한 절차를 위한 보전관리인 등 직무수행자의 선임을 신청하거나 그 선임에 동의한 경우
  - (나) 제3자가 해당 회사에 대하여 위 (가)에 기재된 어느 절차의 개시 또는 직무수행자의 선임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회사가 이를 그 신청일로부 터 육십(60)일 내에 실효시키지 못한 경우
  - (다) 해당 회사가 지급불능상태에서, 변제명목으로 자신의 자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거나, 채권자들과 채무일부감액, 만기연장 등 채무제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해당 회사가 부채의 전부 혹은 실질적 전부를 지급할 수 없거나 그 지급을 유예할 수 없어, 그 부채의 만기연장, 상환일정 재조정, 채무일부감면 기타 조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거나 그 밖에 지급불능사태를 막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금융기관간의 자율협약 또는 그와 유사한 효력을 가지는 협약 체결은 제외함)
  - (라) 해당 회사의 주채권은행이 해당 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 징후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회사에 이를 통지한 경우
  - (마) 해당 회사에 대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 (바) 해당 회사에 관해 해산 또는 청산의 결의가 있거나, 법원에 그 해산 또 는 청산을 위한 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 (사) 해당 회사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경우

- (아) 해당 회사가 자신이 지급불능상태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경우
- 22. "사채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함은 금융계약에 따라 차주가 대주에 대하여 부담 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상사채에 대하여 담보권자를 위한 제 1순위 근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제10조 제3항에 따라 체결되는 사채근질권 설정계약을 의미한다.
- 23. "사채인수계약"이라 함은 대상사채와 관련하여 차주, 대상회사 및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사이에 2014년 3월 14일 체결된 신주인수권부 사채인수계약 및 2016 년 5월 13일 체결된 그 변경계약을 의미한다(그 후 수정 또는 변경된 계약을 모두 포함한다).
- 24. "스폰서"라 함은 한국법에 따라 설립되고 본점을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6(을지로2가)에 두고 있는 유안타에이치피엔티 사모투자 합자회사를 말한다.
- 25. "영업일"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을 하는 날로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대체 공휴일 및 임시 공휴일을 포함함)을 제외한 날을 의미한다.
- 26. "예금채권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함은 금융계약에 따라 차주가 대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배당금등수령계좌에 대한 예금반환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자를 위한 제1순위 근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제10조 제4항에 따라 체결되는 예금채권근질권설정계약을 의미한다.
- 27. "운영계좌"라 함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개설되는 계좌를 의미한다.
- 28. "이자기간"이라 함은, 대출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 (가) 최초 이자기간은 인출일로부터 기산하여 삼(3)개월이 되는 달의 인출일 의 응당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 (나) 최초 이자기간 이후의 이자기간은 직전 이자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개 시하여 그로부터 삼(3)개월이 되는 달의 인출일의 응당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다) 만약, 이자기간이 대출만기일 이후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기간

은 대출만기일에 종료한다.

- 29. "이자지급일"이라 함은 매 이자기간의 마지막 날(단,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의미한다.
- 30. "인출"이라 함은 이 계약에 따른 대출금의 인출을 의미하며, 인출이 일어나는 날을 "인출일"이라고 한다.
- 31. "인출가능기간"이라 함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이(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 32. "인출요청서"라 함은 별첨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작성되는 인출요청서를 의미한다.
- 33. "조건부 대여약정"이라 함은 (i) 기존 조건부 대여약정 또는 (ii) 기존 조건부 대여약정이 이 계약 종료시까지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경우 제10조 제5항에 따라 대주로서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및/또는 PSA 와 차주 사이에 체결되는 조건부 대여약정을 의미하며, 조건부 대여약정상의 대주를 "조건부 대주"라 한다.
- 34. "주식근질권설정계약"라 함은 금융계약에 따라 차주가 대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상주식에 대하여 담보권자를 위한 제1순위 근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제10조 제2항에 따라 체결되는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을 의미한다.
- 35. "주주간계약"이라 함은 차주,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PSA 및 대상회사 사이에 2019년 1월 31일 체결된 Shareholders Agreement 를 의미한다(그 후 수정 또는 변경된 계약을 모두 포함한다).
- 36.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 (가) 차주 또는 대상회사의 사업, 영업, 자산, 재무상태
  - (나) 차주의 금융계약에 따른 지급의무를 포함한 중요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

- (다) 금융계약 자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 또는 금융계약상 중요한 조건에 따른 대주의 권리나 구제수단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
- 37. "출자환급"이라 함은 회사가 그 주주 또는 사원에 대하여 자본감소, 이익배당,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취득, 기타 자신의 주주 또는 사원들에게 그 보유주식 또는 보유출자지분과 관련하여 금전 또는 기타 자산을 분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38. "피담보채무"라 함은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담보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 거나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추가, 대체, 변경되는 채무를 포함함)를 의미한 다.
- 39. "허용된 담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담보를 의미한다.
  - (가) 금융계약과 관련하여 대주를 위하여 설정된 담보
  - (나) 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담보
  - (다) 기존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담보. 단, 이는 인출일에 전부 해지되어야 함(의미를 명확히 하면 담보 해지의 대항력 구비절차가 인출일 에 이루어져야 함).
  - (라) 기타 대주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설정된 담보
- 40. "허용된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부채를 의미한다.
  - (가) 금융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 (나) 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채
  - (다) 조건부 대여약정 등 기존 거래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 (라) 기존 차입금. 단. 이는 인출일에 전부 상환되어야 함.
  - (마) 기타 대주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부담하는 부채

- 41. "PSA"라 함은 PSA Financial Pte. Ltd.를 말한다.
- 42. "TSA 계약"이라 함은 에이치엠엠 주식회사의 본건 터미널의 사용과 관련하여 최소 물동량 보장, 기항의무 등의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대상회사와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사이에 2019년 1월 31일 체결된 Terminal Service Agreement를 의미한다(그 후 수정 또는 변경된 계약을 모두 포함한다).

# 제 2 항 해석 및 참조

- 가. 이 계약에서 조항이나 별첨, 서식에 대한 언급은 이 계약상 조항이나 첨부된 별첨, 서식을 의미한다.
- 나. 표제와 목차는 편의상 기재된 것으로 이 계약 해석에 어떠한 참고도 되지 않는다.
- 다. 이 계약에서 "개월"이라 함은 어느 역월(曆月)의 기산일에 개시하여 그 다음 역월의 그 기산일에 숫자상으로 상응하는 날에 종료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단, 위 기간이 역월의 최종일에 개시된 경우 또는 숫자상으로 상응하는 날이 없는 경우 위 기간은 해당 역월의 최종일에 끝나는 것으로 하되, 이 계약에서 별도의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 라. 이 계약에서 금융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 및 문서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변경 및 보충을 포함한다.
- 마. 이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계약의 당사자와 이 계약에서 언 급된 자는 그 적법한 승계인 및 양수인을 포함한다.
- 바. 이 계약상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 등에 대한 언급은 이 계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 등을 말하고, 이 계약 체결일 후 개정, 대체 등이 있는 경우 그 개정 또는 대체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 등 을 포함하다.
- 사. 이 계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회계용어의 의미는, 이 계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으로서 해당 회사에 적용되는 회계원칙에 따른다.

아. "응당일"이라 함은 관련 일과 월력상 날짜가 동일한 날을 의미한다.

## 제 2 조 대출약정

## 제 1 항 대출약정

대주는 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인출가능기간 중 영업일에 대출약정금을 한도로 차 주에게 대출을 제공하기로 한다.

## 제 2 항 대출금의 사용 목적

- 가. 차주는 이 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i) 기존 차입금(대출금, 이자, 조기상환수수 료 및 제비용을 포함함)의 상환, (ii) 본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수수료의 지급 및 (iii)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부대비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나. 대주는 차주의 대출금 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제 3 조 인출

#### 제 1 항 인출 절차

- 가. 차주는 인출가능기간 내의 어느 영업일에 대출약정금의 전부를 일(1)회에 한 하여 인출할 수 있다.
- 나. 차주는 인출요청서를 대주에게 인출예정일로부터 삼(3)영업일 이전(또는 대주 가 달리 동의하는 이보다 더 늦은 날)에 제출함으로써 인출을 요청한다.
- 다. 대주는 차주로부터 인출요청서를 수령하는 경우, 차주와 대주 사이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 계약상 인출에 적용되는 인출선행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인출일에 대출금을 차주 명의의 운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당해 금원은 입금 즉시 인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주가 이와 같이 운영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한 때에 차주가 해당 금원을 차입한 것으로 본다.

## 제 2 항 인출요청의 취소 불가능

이 계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차주의 이 계약에 따른 인출요청은 취소할 수 없으며, 차주는 인출요청서의 내용에 따라 대출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차주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대주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인출요청에 따른 인출을 하지 않은 경우, 차주는 이로 인하여 대주가 입은 손실과 비용(대주가 대출을 위하여 조달한 자금을 취소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포함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제 3 항 인출선행조건

대주가 차주에게 대출약정금을 대출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대주가 합리적 으로 만족할 만한 내용으로 충족될 것을 그 조건으로 한다.

- 가. 대주에게 인출일로부터 삼(3)영업일 이전(또는 대주가 달리 동의하는 이보다 더 늦은 날)에 인출요청서를 제출할 것
- 나. 인출요청서를 제출하는 날(또는 대주가 달리 동의하는 이보다 더 늦은 날)까지(별첨 3.에 그 제출시기가 달리 기재된 서류는 그 기재된 시기까지) 별첨 3.에 기재된 인출선행조건 서류들을 제출하고, 그러한 서류들이 인출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질 것
- 다. 기존 거래계약 및 금융계약의 체결, 교부 및 그 의무이행을 위하여 차주 및 대상회사에 요구되는 모든 인허가가 유효, 적법하게 취득되어 유지되고 있을 것
- 라. 인출일까지 체결되어야 하는 모든 기존 거래계약 및 금융계약이 대주가 합리 적으로 만족할 만한 내용과 형식으로 적법·유효하게 체결되어 그 효력을 유지 하고 있을 것
- 마. 이 계약과 기타 금융계약에서 차주가 행한 모든 진술과 보장이 인출일 당시에 도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중요한 점에서 여전히 진실하고 정확할 것
- 바. 인출일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또는 잠재적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존속 하지 않으며, 해당 인출로 인하여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도 않을 것



- 사. 금융계약에 따라 인출일까지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대주에 대한 수수료 및 비용을 전부 지급하였거나 인출일에 지급할 수 있을 것
- 아. 차주 및 대상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여 존속하고 있지 않을 것
- 자. 인출예정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대주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단, 대주의 이러한 요구는 이 계약 체결 후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상황이 발생 한 경우 그와 관련된 것에 한한다)가 대주에게 제출되었을 것

## 제 4 항 인출후행조건

대주가 차주에 대한 대출금을 이 계약에 따라 보유하고 유지할 의무는 별첨 4.에 기재된 인출후행조건 서류들이 별첨 4.에 명시된 시기까지 제출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제 4 조 이자 및 연체이자

#### 제 1 항 이자율

대출금에 적용되는 각 이자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연 4.0%의 고정금리로 한다.

#### 제 2 항 이자지급

차주는 대출금의 각 이자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를 관련 이자지급일에 후급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 제 3 항 역체이자

차주가 금융계약상 변제기가 도래(기한의 이익 상실로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차주는 해당 금원에 대하여 당해 지급의무일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의 연체기간 동안,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이자율에 연 5.0%를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 4 항 이자, 연체이자의 계산

- 가. 이자 및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보고 실제 경과된 일수로 일할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그에 따라 계산한 대출이자 금액과 별첨 1. 분할상환일정표에 기재된 대출이자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별첨 1.에 기재된 대출이자 금액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나. 실제 경과된 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관련 이자기간 또는 연체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되 말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 5 조 상환 및 조기 상환

#### 제 1 항 상환

차주는 대출금을 별첨 1.에 기재된 분할상환일정표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 제 2 항 임의 조기상환

- 가.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주는 아래 조건에 따라 대출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다.
  - 1. 차주는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대출금의 금액 및 조기상환일을 적시하여 조기상환일로부터 삼(3)영업일 이전에 대주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 야 한다.
  - 2. 조기상환되는 대출금은 ① 금 오억(500,000,000)원 또는 그 이상인 경우 금 일억(100,000,000)원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나, ② 대출금 전액이어야 한다.
  - 3. 조기상환일은 이자지급일이어야 한다.
  - 4. 차주는, 조기상환하는 대출금과 함께, 조기상환일까지 당해 대출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적용이 있는 범위에서) 조기상환수수료와 당해 대출금과 관련하여 이 계약상 차주가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본항에 따른 대출금의 조기상환이 인출일로부터 삼십육(36)개월째 되는 날까

지의 기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차주는 조기상환하는 대출금의 0.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수수료로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의미를 명확히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인출일로부터 삼십육(36)개월째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의 기간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다. 대주는 조기상환일의 일(1)영업일 전까지 조기상환되는 금원을 수취할 계좌를 차주에게 별도로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차주는 조기상환일에 대주에게 조기상환할 금원을 대주가 통지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본항에 따른 조기상환을 한다.

## 제 3 항 의무 조기상환

- 가.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차주는 다음의 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원이 배당금등수령계좌에 입금되도록 하여야 하고, 입금일로부터 이(2)영업일 이내에 이를 대출금,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적용이 있는 범위에서) 조기상환수수료 기타 금융계약에 따라 이행기가 도래한 금원의 지급을 위하여 이를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차주는 본호에 따른 조기상환일로부터 늦어도 이(2)영업일 전에 이러한 조기상환을 대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차주가 그 사유를 불문하고 대상사채, 대상주식을 포함한 차주의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 전액(단, 당해 매각과 관 련하여 부과된 각종 제세공과금 및 당해 매각을 위하여 차주가 합리적으 로 지출한 비용은 공제함)
  - 2. (i) 대상주식에 대하여 출자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ii) 대상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환되는 경우, 또는 (iii) 기타 차주가 대상주식 및/또는 대 상사채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령하는 경우(단, 대상주식에 대한 배당금 및 대상사채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아래 3.이 적용됨), 그 수령금원 전 액(단, 금원의 수령과 관련하여 부과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이를 위하여 차주가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공제함)
  - 3. 대상주식에 대한 배당금, 대상사채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거나 또는 조건 부 대여약정에 따른 차입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합계액으로서 연간 금 일백일십억(11,000,000,000)원 상당액. 의미를 명확히 하면, 차주가 본 3.

에 따라 수령한 금액이 합계 연간 금 일백일십억(11,000,000,000)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은 본 3,에 따라 조기상환되어야 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4. 인출일 후 차주의 사원이 지분을 추가적으로 인수하거나 차주가 후순위 부채(조건부 대여약정에 따른 차입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위 3.이 적용됨) 를 차입하는 경우, 당해 인수대금 전액 또는 후순위부채 전액(단, 차주의 당해 지분 발행 또는 당해 후순위부채 차입과 관련하여 부과된 각종 제 세공과금 및 당해 거래를 위하여 차주가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공제 함).
- 나. 위 가.호 1., 2. 및 4.에 따라 대주가 차주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아래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한다.
  - 1. 금융계약상 지급기일이 도래한 제반 비용
  - 2. 대출금에 대하여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연체이자 포함)
  - 3. 대출금 원금
- 다. 위 가.호 3.에 따라 대주가 차주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아래의 순서로 적립 및 변제에 충당한다.
  - 금융계약상 지급기일이 도래한 제반 비용
  - 2. 대출금에 대하여, 인출일로부터 매 1년 단위의 기간 동안 발생할 이자 전액의 적립 및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연체이자 포함)의 지급
  - 대출금 원금(단, 차주는 단위기간 내에서 대주와 협의 후 조기상환 시점 을 정할 수 있다)
- 라. 본항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대상회사가 신규 금융부채를 차입하여 본항에 따른 배당금(단, 대상회사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 지급을 위한 현금이부족한 경우로서, 대상회사가 신규 금융부채를 차입하여 대상주식의 우선배당율에 따른 배당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해당 배당금 상당액은 제외한다). 출

자환급 대금 등을 조달한 경우(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차주가 대상주식을 대상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대상회사가 신규 금융부채를 차입하여 출자환급을 진행하고 대상주식의 매수인이 그 출자환급 대가로 대상주식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여 차주가 이 계약에 따른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차주가 이러한 수령금을 재원으로 하여 본항에 따른 조기상환을 하는 것은 이 계약 제5조 제2항에 따른 임의조기상환으로 간주되어 제5조 제2항 나.호가 적용된다.

## 제 4 항 조기상환 관련 제한 및 대출약정금의 취소

- 가. 차주는, 이 계약상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의 사전동의 가 없는 한 대출금을 조기상환하거나 대출약정금을 감액할 수 없다.
- 나. 차주의 본 조에 따른 조기상환 통지는 취소할 수 없으며 차주는 통지한 조기 상환일에 통지된 내용에 따라 관련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여야 한다.
- 다. 대출금이 조기상환되는 경우, 조기상환된 한도 내에서 대주의 대출약정은 취소되며, 차주는 조기상환한 금액을 다시 차입할 수 없다.
- 라. 인출가능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인출되지 아니한 대출약정금은 모두 취소되며 이에 대한 대주의 대출약정도 소멸한다.

# 제 6 조 수수료와 비용

## 제 1 항 비용

- 가. 차주는, 금융계약(금융계약의 변경계약 및 이에 부속하는 서류를 포함하며, 이 에 한하지 않음) 및 그에 따라 작성되는 모든 서류에 관한 협상, 주선, 준비, 작성, 등록, 대출주선 그리고 이 계약에 따라 대주가 행하는 조사, 계산, 인허가, 동의 또는 포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합리적인 비용과 수수료(법률비용 또는 기타 수수료와 번역, 출장 기타 실제 소요된 경비 포함)로서 대주가 차주와의 협의 하에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보상하여야 한다.
- 나. 차주가 금융계약의 변경, 금융계약상 조건의 면제 또는 금융계약과 관련한 동

의를 요청하는 경우, 차주는 대주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오(5)영업일(또는 차주와 대주가 달리 합의하는 날) 이내에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합리적인 비용과 수수료(법률비용 또는 기타 수수료와 번역, 출장 기타 실제 소요된 경비 포함)로서 대주가 지출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거나 보상하여야 한다.

- 다. 대주는 위 가.호에 따른 비용 청구 시 해당 비용에 대한 명세와 증빙서류를 차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라. 차주는 위 가.호의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관련 부속약정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다.

## 제 2 항 집행비용

- 가. 차주는 대주가 수시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금융계약에 기한 권리의 집행, 금 융계약에 따른 채권 회수를 위한 소송, 금융계약에 기한 기타 권리의 보전, 금 융계약과 관련하여 대주가 타인으로부터의 소송, 청구 등을 방어하기 위한 절 차에서 지출한 합리적인 범위의 비용과 수수료(법률비용과 기타 수수료와 기 타 실제 소요된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제반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다)를 대주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 나. 대주는 그러한 비용과 수수료에 관한 영수증, 명세서 등 기타 증빙서류를 차 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 3 항 계약 관련 세금

차주는 이 계약 및 기타 금융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현재 및 장래의 인지 세와 기타 이와 유사한 세금, 공증료, 등록수수료 및 이와 유사한 수수료를 모두 지 급하여야 하며, 그러한 세금 또는 수수료를 체납함으로 말미암아 대주가 입은 손실 을 보상하여야 한다.

#### 제 7 조 지급

#### 제 1 항 차주의 지급



- 가.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은 해당 지급일에 인출 가능한 자금으로 대주가 별도로 정하여 통지하는 계좌로 정오까지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당해 금원은 입금 즉시 인출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차주가 대주가 통지한 계좌로 위 금원을 지급한 때에 대주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나. 차주는 금융계약상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원을, 법상 요구되지 않는 한, 어떠한 공제나 원천징수를 함이 없이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의미를 명확하게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대주 또는 그 양수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이를 대체하는 내용의 개정 법령을 포함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주는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당해 대주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후 이자를 지급한다.

## 제 2 항 변제의 충당

- 이 계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주가 차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이 계약상 이행기가 도래(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포함)한 피담보채무 전부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대주는 아래의 순서로 지급받은 금원을 충당하여야 한다.
  - 1. 채권 회수를 위하여 대주가 지출한 비용 및 수수료
  - 2. 금융계약에 따라 대주에게 지급할 제반 수수료 및 제반 비용
  - 3. 금융계약에 따라 대출금에 대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연체이자 포함)
  - 4.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기일이 도래한 대출금

#### 제 3 항 영업일

이 계약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영업일이 아닌 날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그 다음의 영업일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에 따른 이자도 조정된다.

## 제 8 조 계좌의 운영

## 제 1 항 배당금등수령계좌

- 가. 차주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차주 명의로 개설된 배당금등수령계좌(계좌번호: 100-910021-85505)를 이 계약의 기간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 나. 차주는 대상주식과 관련한 배당금, 대상사채에 대하여 지급되는 이자, 조건부 대여약정에 따른 차입금, 기타 이 계약에 따른 대출금 외에 차주 앞으로 지급 되는 모든 금원을 배당금등수령계좌에 입금하거나 직접 입금되도록 하여야 한 다.
- 다. 차주는 위 나.호에 따라 배당금등수령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1) 대상주식과 관련한 배당금, 대상사채에 대하여 지급되는 이자 및/또는 조건부 대여약정에 따른 차입금의 연간 합계액{인출일로부터 매 1년 단위의 기간(이하 본조에서 "단위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금 일백일십억 (11,0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는 해당 금원을 이 계약 제5조 제3항 가.호 3.에 따라 의무 조기상환에 사용하여야 하고, (2) 위 금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스폰서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또는 조건부 대여약정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 라. 차주는 위 나.호에 따라 배당금등수령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사용하기 위하여 대주에게 해당 지출 근거에 관하여 명세서, 영수증 등 합리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차주가 대출금 상환 기타 금융계약에 정한 바에 따른 금원의 지급 용도(명확히 하면, 위 다.호에 정한 바에 따른 지급 용도를 포함함)로 관련 자금을 인출하고 대주에게 이와 관련한 합리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주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 2 항 운영계좌

- 가. 차주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차주 명의로 개설된 운영계좌(계좌번호: 100-910034-77404)를 이 계약의 기간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 나. 차주는 이 계약에 따른 대출금이 운영계좌에 입금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차주는 위 나.호에 따라 운영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사용하기 위하여 대주에게 해당 지출 근거에 관하여 명세서, 영수증 등 합리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차주가 대출금 상환 기타 금융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금원의 지급 용도로 관련 자금을 인출하고 대주에게 이와 관련한 합리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주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 9 조 공제금지, 법률의 변경과 사정변경

#### 제 1 항 공제금지

- 가. 차주는 금융계약상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원에 관하여, 법상 요구되지 않는한, 어떠한 공제나 원천징수(제세공과금 부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함이 없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대주 또는 그 양수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이를 대체하는 내용의 개정 법령을 포함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회사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주는 원천징수와관련하여 당해 대주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후 이자를 지급한다.
- 나. 만일 차주가 금융계약상 대주에게 지급할 금원에 관하여, 이 계약 체결 이후 법령의 변경으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어떠한 공제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경 우, 차주는 당해 공제 내지 원천징수된 지급액과 함께 대주가 그러한 공제나 원천징수가 없었더라면 받았을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차주는 대주에게 그러한 공제액이나 원천징수액이 적절한 세무당국 기 타 관청에 납부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당해 공제 내지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당해 대주가 관련 정부당국으로부터 환급을 받거나 또는 당해 대주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받는 경우(환급이나 공제가 가능한 경우 대주는 환급이나 공제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동 금액을 즉 시 차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 2 항 위법

가. 이 계약 체결일 이후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계약상 대주의 의무이 행(자신의 대출금을 유지할 의무를 포함함)이 위법하게 되고 대주가 그러한 위법을 치유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그러한 노력에는 관련법령 및 이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금 채권의 양도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그 위법이 치유되지 않을 경우, 대주는 그 사실을 차주에게 통지할 수 있다(대주가 이러한 통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무상 가능한 범



위에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 나. 차주가 위 가.호에 따른 통지를 수령한 경우, 위 통지를 수령함과 동시에 이 계약에 따른 대주의 대출약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에 따라 대주의 대출의무 및 금융계약상 일체의 의무도 소멸한다.
- 다. 대주가 위 가.호의 통지와 동시에 혹은 그 후에 조기상환을 요구할 경우, 차주는 ① 대주가 위 요구를 하면서 차주와 협의하여 조기상환일을 특정한 경우에는 당해 특정일(단, 대주는 대주의 의무를 위법하게 하는 관련 법령에서 그러한 위법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유예기간의 말일을 조기상환일로 특정하여야 함), ② 대주가 그러한 특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주가 차주에게 위 요구를 한 날로부터 육십(60)일이 경과한 후 도 대하는 이자지급일(대주의 의무를 위법하게 하는 관련 법령에서 그러한 위법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이보다 긴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대출금 전액과 그에 대하여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 및 대출금과 관련하여 이 계약상 차주가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원을 합한 금액을 대주에게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의 조기상환수수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 3 항 추가비용

- 가. 이 계약 체결일 이후 법령의 변경, 법령 해석과 적용의 변경, 관련 정부당국의 지침 등(법령의 효력을 가지는 것에 한함)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주에게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고(이러한 경우의 발생이 대주의 신용등급 또는 자기자본비율 하락, 법령 위반 등 대주 자신에게 발생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대주가 그러한 사항을 치유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그러한 노력에는 관련법령 및 이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금 채권의 양도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을 다하였음에도 이를 치유할 수 없는 경우, 대주는 그 사실을 그 발생일로부터 실무상 가능한 범위에서 조속히 차주에게 통지한다.
  - 1. 대주가 금융계약상 차주가 부담하여야 할 금원을 부담하게 된 경우
  - 2. 금융계약상 대주가 지급받을 이자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원천세, 대주의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 3. 금융계약상 의무를 계속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주에게 이 계약 체결 당시 대주가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 나. 차주는 대주로부터 가.호의 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오(5)영업일 이내에 (대주의 대출금이 상환되었는지에 상관없이) 대주에게 가.호의 지급금액 또는 증가비용이나 수령감소금액(이하 "증가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주가 차주에 대하여 증가비용을 청구하려면 차주에게 증가비용에 대한 발생근거, 산출내역, 명세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증가비용에 관한 대주의확인은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차주에 대해 확정적인 효력을 가진다.
- 다. 위 가.호 각 목의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차주는 대주에 대한 일십(10)영업일 이상의 사전 서면 통지 후에 대주의 대출금을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한 그 대출 금에 대한 이자와 해당 대출금과 관련하여 이 계약상 차주가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원과 함께 전액 조기상환할 수 있다. 본 호에 따른 조기상환의 경우, 제5조 제2항의 조기상환수수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 10 조 담보

## 제 1 항 담보계약

차주는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담보를 제공한다. 모든 담보계약은 대주가 합리적으로 만족할 만한 내용과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제 2 항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차주는 인출일 이전에 담보권자와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주식근질권설정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대상주식에 대하여 대주를 1순위 근질권자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 제 3 항 사채근질권설정계약

차주는 인출일 이전에 담보권자와 사채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사채근질권설정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대상사채(대상사채에 표창된 신주인수권을 포함함)에 대하여 대주를 1순위 근질권자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 제 4 항 예금채권근질권설정계약

차주는 인출일 이전에 담보권자와 예금채권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예금채권근 질권설정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배당금등수령계좌에 관한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대주를 1순위 근질권자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대항요건 구비 포함)하여야 한다.

#### 제 5 항 조건부 대여약정

- 가. 차주는,(i) 기존 조건부 대여약정을 이 계약 종료 시까지 유지하거나,(ii) 그 사유를 불문하고 기존 조건부 대여약정이 이 계약 종료 시까지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경우,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및/또는 PSA 와의 사이에서, 기존 조건부 대여약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및/또는 PSA 가 기존 조건부 대여약정상 조건부 대주로서 부담하던 모든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조건부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 계약 종료 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 나. 조건부 대여약정은 차주의 조건부 대주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 채무가 차주의 금융계약상 일체의 채무가 상환된 이후에만 상환이 가능한 후순위인 조건이어야 한다. 다만, 대상주식에 대한 배당금, 대상사채에 대한 이자 및 조건부대여약정에 따른 차입금의 연간 수령 합계액이 금 일백일십억(11,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이 계약 제8조 제1항 다.호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스폰서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또는 조건부 대여약정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 제 11 조 진술 및 보장

차주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이 계약 체결일, 인출일 및 매 이자지급일 현재(단, 아래 각 항에서 진술 및 보장이 이루어지는 일자를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에 한한다) 다음과 같이 진술 및 보장한다.

#### 제 1 항 법인격 및 자격

차주는 대한민국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유한회사이다.



## 제 2 항 법적 능력 및 권한

차주는 현재의 사업을 영위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소유하며, 금융계약에 따른 채무 및 기타 의무를 부담하고, 금융계약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작성, 교부하고, 그 모든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제 3 항 차입의 숭인

차주는 이 계약과 기타 금융계약을 작성, 교부하거나 그 조건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사 내부의 모든 수권절차를 완료하였다.

#### 제 4 항 인허가

차주는 금융계약의 작성, 교부,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법 유효하게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것이며, 그 인허가상의 조건을 위반한 바 없다.

## 제 5 항 계약의 구속력; 법과 기타 약정의 준수

금융계약에 따른 차주의 의무는 적법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며, 차주에 대하여 집행가능하다. 차주의 이 계약의 체결, 교부, 이행 및 제2조 제2항에 따른 대출금의 사용은 ① 차주에게 적용되는 법령에도 위반되지 않고, ② 차주의 정관에 위배되지 않으며, ③ 차주 또는 차주의 자산에 관한 어떠한 계약이나 증서를 위반하지 않는다.

#### 제 6 항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의 부존재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또는 잠재적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차주가 당사자인 계약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발생할 수 있는 차주의 계약의 불이행은 발생하여 존속하고 있지 않다.

#### 제 7 항 법령의 준수 등

차주는, 중요한 측면에서 세법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적용되는 모든 법령, 규정, 지시 및 정부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인출일 현재까지 차주 또는 차주의 재산에 대하여 납기일이 도래한 모든 세금, 부과금 및 공과금의 납부를 완료하였다.



#### 제 8 항 법적 조치

차주는 금융계약 및 그에 따라 작성, 교부될 모든 서류의 적법성, 유효성 및 집행가 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등기, 등록 또는 신청 절차(이 계약과 금융계약 체결일 이후 요구되는 것은 제외)를 완료하였다.

#### 제 9 항 채무의 부존재

차주에게는, 허용된 부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채도 존재하지 않는다.

#### 제 10 항 담보

차주는, 허용된 담보를 제외하고, 그 모든 자산에 대해 일체의 담보가 없는 상태의 유효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 제 11 항 소송

이 계약 체결일 현재 차주나 대상회사의 경영이나 재정상황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주, 대상회사 또는 차주, 대상회사의 자산에 대한 소송이나 행정절차 또는 중재가 현재 계속되어 있지 않으며, 차주가 알고 있는 한, 그러한 소송이나 행정절차 또는 중재가 제기될 우려도 없다.

# 제 12 항 정보의 정확성

차주가 대주에게 이 계약의 협상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제공한 정보는 제공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중요한 점에서 정확하며, 차주는 이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모 든 중요한 정보를 대주에게 제공하였다. 다만, 대상회사에 관한 정보는 차주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러하다.

#### 제 13 항 부도사유의 부재

차주 및 대상회사는 부도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차주가 아는 한 그러한 우려도 없다.

#### 제 14 항 재무제표

차주 및 대상회사의 최근 재무제표(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포함한다)는 한국법과 한국기업회계기준(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이 관련 법령 또는 그 선택에따라 적용되는 경우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의미함} 기타 대한한국 내에서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고, 그 기간 동안의 차주의 재무상태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위 재무제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차주 및 (차주가 알고 있는 한) 대상회사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발채무나 우발손실은 없다.

## 제 15 항 기존 거래계약의 존속 등

- 가. 기존 거래계약은 그 당사자 사이에 유효·적법하게 체결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위 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의무이행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나. 이 계약 체결일 및 인출일 현재 기존 거래계약상 해지 또는 해제사유, 취소 사유, 기타 각 계약의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 다.

# 제 16 항 지분보유 등

- 가. 인출일 현재, 스폰서는 차주의 의결권 있는 총지분의 100%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과 의결권을 유효,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
- 나. 인출일 현재, 차주는 대상주식에 대하여 제10조 제2항에 따른 근질권 설정과 관련하여 대상회사의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였다.
- 다. 관련 법령 또는 차주 또는 대상회사의 정관 및 차주 또는 대상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위 근질권 실행에 따른 대상주식의 처분은 제한 또는 금지 되고 있지 아니하다.

## 제 12 조 적극적 준수사항

차주는 이 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대주에게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 제 1 항 재무제표 등의 제출 의무

- 가. 차주는 대주에게 ①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i) 구십(90)일 이내에 회계법 인이 작성한 대상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ii) 일백이십(120)일 이내에 회계법인이 작성한 차주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② 매 회계연도의 반기 종료일로부터 (i) 육십(60)일 이내에 대상회사가 작성한 대상회사의 반기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함)를, (ii) 구십(90)일 이내에 차주가 작성한 차주의 반기재무제표를, ③ 매년 4월 30일까지 회계법인이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상주식의 가치평가보고서를, 각 제출하여야한다. 단, 위 ③에 따라 제출하는 가치평가보고서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는 가치평가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나. 차주는 대주에게 대주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차주 또는 대상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실무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조속히 제공하여야 한 다.

## 제 2 항 제세공과금

차주는 자신 또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모든 세금, 부과금 및 공과금을 납기일이 도 대한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 3 항 인허가의 유지 및 관련 법령 준수

- 가. 차주는 제11조 제4항에 명시된 정부의 모든 인허가를 유효하게 유지하고, 금융 계약상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를 취득하여 야 한다. 차주는 중요한 측면에서 자신에게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나. 차주는 대상회사로 하여금 이 계약 체결일 현재 영위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법령상, 계약상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 제 4 항 법인격의 유지

차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의 법인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 5 항 통지

- 가. 차주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나 잠재적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제11조 제11 항의 소송, 행정절차나 중재, 기타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 실이 발생한 경우 대주에게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삼(3)영업일 이내에 가능한 한 신속히 이러한 사실을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차주가 취하고 있는 조치의 내역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나. 차주는, 대주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 시점에 차주가 알고 있는 한 대주에게 이미 통지한 사항 이외에는 달리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나 잠재적인 기한의이익 상실사유, 제11조 제11항의 소송, 행정절차나 중재, 기타 중대한 부정적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 6 항 추가 서류 및 조치

차주는 대주가 이 계약이나 담보계약의 효력유지 또는 이에 따른 담보권자의 권리 보존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청할 경우 이러한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 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7 항 담보계약 및 담보권의 유지

- 가. 차주는 담보계약 및 그에 따라 설정된 담보가 관련 담보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적법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차주는, 금융계약이나 관련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물에 대하여 대주가 항상 최선순위의 담보권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8 항 적절한 장부관리 및 열람인용

차주는 자신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적절한 재무제표, 회계장부, 영수증 기타 관련 서류들을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 보관하여야 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또는 중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주가 합리적으로 판단 하는 경우 대주나 대주가 선임한 회계사나 자문기관이 사전 통지를 하면, 영업시간 내에 차주의 일상영업을 중대하게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서류들을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 9 항 대출금 사용목적의 준수

차주는 대출금을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사용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 10 항 진술 및 보장사항의 정확성 유지

차주는 이 계약 제11조에 정한 모든 진술 및 보장사항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회사에 관한 진술 및 보장사항에 대해서는 차주는 당해 진술 및 보장사항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대상회사에 대한 모든 법령상, 계약상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 제 11 항 대상회사 준수사항

- 가. 차주는 대상회사로 하여금 부산항만공사와의 본건 터미널 임대차계약(승계계약을 포함함), 본건 터미널 관련 하역장비 임차계약, 기타자산 임차계약(각 부속합의를 포함함) 등 본건 터미널의 운영 등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제반계약 및 인허가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법령상, 계약상 권리와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 나. 차주는 이 계약의 기간 동안, 대상회사로 하여금 주주간계약에 따른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본건 터미널에 대한 TSA 계약이 계속해서 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법령상, 계약상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고, 위 갱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12 항 대상회사 주식양도 관련

PSA 가 보유하는 대상회사의 보통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기 위하여 해당 양도를 승인하는 대상회사의 이사회가 개최되는 경우, 차주는 동 이사회 개최 전에 대주와 사전에 협의하고 차주 또는 차주의 사원 기타 차주의 관계회사가 선임한 대상회사의 이사들로 하여금 이 계약상 대주의 의사결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13 조 소극적 준수사항

차주는 이 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대주에게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 제 1 항 금융부채 부담금지

차주는 대주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허용된 부채 이외에 어떠한 부채도 부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2 항 담보제공의 금지

차주는 대주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허용된 담보 이외에 차주의 일체의 유·무형 자산에 대하여 직접적이나 간접적인 어떠한 담보도 설정하지 않는다.

## 제 3 항 구조조정의 제한

차주는, 주주간계약에 정한 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 상법상 회사형태의 변경
- 나. 분할, 청산, 해산이나 다른 회사와의 합병
- 다. 단일 거래나 복수의 거래에 의한 재산이나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매매, 양도, 기타 처분(단, 대상주식 및/또는 대상사채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9 항을 적용한다)
- 라. 타인의 영업 양수 또는 타인에 대한 투자(지분 또는 지분연계증권의 취득이나 이를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의 취득을 의미하며, 차주의 경우 대상회사에 대한 투자는 제외함)
- 마.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의 설립
- 바. 일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물품의 구매나 대상주식을 제외한 단일 거래나 복수의 거래에 의한 재산이나 자산의 매입



## 제 4 항 출자환급 등의 제한

차주는 이 계약에 따른 피담보채무가 모두 상환되기 이전에는 이 계약 제8조 제1항 다.호 및 조건부 대여약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사원들 또는 기타 채권자들에게 어떠한 출자환급 기타 지급도 할 수 없다.

#### 제 5 항 신용공여의 금지

차주는 대주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타인(대상회사는 제외함)에 대한 대여, 보증 기타 일체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6 항 사업 변경

차주는, 대주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이 계약 체결일 현재 차주가 실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 및 정관에서 사업목적으로 기재된 사업 이외에 중요한 면에 있어서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 제 7 항 정관 변경 등

- 가. 차주는, 대주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정관의 중요부분을 수정하거나 개정하여 서는 아니된다(단,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이 계약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위한 변경인 경우 또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나. 차주는, 대주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차주의 회계연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 다.

#### 제 8 항 유상증자 금지

차주는, 대주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주주배정인지 제3자 배정인지 그 방법을 불문하고, 유상증자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9 항 대상사채 및 대상주식의 처분

차주는 대주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차주가 소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및 대상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거나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처분으로 인한 매각대금으로 배당금등수령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이 제5조 제3항에 따른 조기상환일 현재 피담보채무의 총액 이상이고 그 매각대금이 동항에 따라 조기상환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0 항 계좌개설 등의 제한

차주는, 대주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인출일 이후 제8조에서 정한 계좌 이외의 예금계좌를 금융기관에 개설할 수 없으며 인출일 현재 제8조에서 정한 계좌 이외의 차주 명의로 개설된 모든 예금계좌를 인출일로부터 이(2)영업일 이내에 폐쇄하고 대주에게 이에 대한 증빙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 11 항 투자

- 가. 차주는, 대주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가 없는 한, 일체의 투자(자회사 설립, 유가증권에의 투자, 시설투자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차주는 대주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 대하여 영업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신용공여행위도 하여서 는 아니된다.

#### 제 12 항 주요계약

- 가. 차주는 대주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가 없는 한, 기존 거래계약(TSA 계약은 제외함, 이하 본항에서 같음)의 조건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를 위한 동의를 해주어서는 아니된다. 단, 이로 인하여 차주에게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변경은 제외한다.
- 나. 차주는 대주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가 없는 한, 대상회사로 하여금 부산항만 공사와의 본건 터미널 임대차계약(승계계약을 포함함), 본건 터미널 관련 하역 장비 임차계약, 기타자산 임차계약(각 부속합의를 포함함) 등 본건 터미널의 운영 등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제반 계약의 조건 또는 내용을 변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동의를 해주어서도 아니된다. 단, 이로 인하여 차주에게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변경은 제외한다.

#### 제 13 항 경영권 변동

- 가. 차주는 이 계약에 따른 피담보채무가 모두 상환되기 이전에는, 대주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가 없는 한, 차주의 경영권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스폰서 역시 이 계약에 따른 피담보채무가 모두 상환되기 이전에는 해산되거나 청산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스폰서와 PSA 내지 그 계열사와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주주간계약 포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스폰서가 PSA, 그 계열사 또는 PSA 나 그 계열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차주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허용된다.
- 나. 차주는 이 계약에 따른 피담보채무가 모두 상환되기 이전에는, 대주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가 없는 한, 대상회사의 경영권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 14 조 기한의 이익 상실

### 제 1 항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이 계약상 다음 각 호의 사유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구성한다.
- 가.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어떠한 금원을 그 지급기일 내에 지급 하지 못한 경우. 단 그와 같은 미지급이 금융기관 사이의 계좌이체상의 기술 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일 (1)영업일 내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 나. 금융계약에 따라 차주가 하였거나 한 것으로 간주된 진술 및 보장 사항이 그 진술 및 보장 당시 중요한 점에서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고 차주 가 대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이십(20)영업일 이 내에 이를 시정하지 못한 경우
- 다. 차주가 이 계약 또는 기타 금융계약에 따른 준수사항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거나 위반하고 대주가 차주에게 그러한 불이행이나 위반을 통지한 날로부 터 이십(20)영업일 이내에 이를 치유하지 못한 경우(다만, 본 항의 별도의 조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 또는 의무위반에 관하여는 본 호에 우선하여 당해 조항이 적용된다)
- 라. 차주 또는 대상회사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금 일십억(1,000,000,000)원을 초과

하는 금융부채(단, 허용된 부채는 제외함)를 그 지급일에 변제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금융부채에 관하여 관련 계약에 명시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사 유의 발생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 마. 차주 또는 대상회사에 관하여 부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바. 담보물이나 차주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에 대하여 금 일십억 (1,000,000,000)원, 대상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에 대하여 금 일십억(1,000,000,000)원 이상의 가압류(차주의 경우에 한한다), 압류명령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임의경매 또는 강제집행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의 착수가 있고 그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이러한 절차가 실효되거나 중단되지 않은 경우
- 사. 제3조 제4항에 따라 인출후행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 아. 정부당국이 차주 또는 대상회사의 주요자산에 대하여 몰수, 징발, 수용 기타 이에 준하는 처분을 하거나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경우
- 자. ① 어느 금융계약의 효력이 무효, 취소 기타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 또는 ② 어느 금융계약의 유효, 적법, 이행가능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 차. 차주가 금융계약상 주요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주요 의무가 더이상 차주에 대하여 유효, 적법한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 차주에 대하여 금 일십억(1,000,000,000)원, 대상회사에 대하여 금 일십억 (1,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그 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가집행이 허용된 경우에,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삼십 (30)일 이내에, 차주 또는 대상회사가 이러한 판결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실효시키지 못한 경우 또는 그 효력이나 집행을 중지시키지 못한 경우
- 타. 차주 또는 대상회사에 대하여, ① 어떠한 인허가가 취소되거나 철회되어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경우, ② 어떠한 인허가사항이 수정되거나 새로운 조건이 부과됨으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경우 또는 ③ 차주 또는 대상회사가 어떠한 인허가에 부과된 조건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 파. 기존 거래계약이 해제, 해지되거나 여하한 사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단, TSA 계약이 해제, 해지되는 경우는 본호가 아닌 더.호를 적용하며, 에이치엠엠 주식회사에 대한 부도사유나 기타 에이치엠엠 주식회사와 관련된 사유로 인해 기존 거래계약(TSA 계약 제외)이 해제, 해지되는 경우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하. 담보계약에 따라 설정된 담보권이 실효되거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
- 거. 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주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스폰서가 보유하는 차주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거나 담보제공하는 경우
- 너. 이 계약에 따라 대주에게 교부되는 회계법인이 작성한 차주 또는 대상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한정",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이 기재된 경우
- 더. 기타 차주 또는 대상회사의 영업, 자산 및 재무상태를 전체적으로 보아 종합 적으로 판단했을 때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여 차주가 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또는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대주가 합리적으 로 판단한 때

#### 제 2 항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의 효과

- 가. 제1항 가.호 또는 마.호에 규정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출 약정금에 관한 대주의 대출의무는 소멸하고 대출금 전액, 이에 대한 발생이자 및 기타 금융계약에 따른 일체의 채무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대주에 의한 이행청구나 독촉 등의 조치가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즉시 그 지급기일이 도래한다.
- 나. 제1항 가.호 또는 마.호 이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존속하고 있는 경우, 대주는 ① 대출약정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에게 이 계약에 따른 대주의 대출의무가 소멸하였음을 통지할 수 있고, ② 대출약정금이 일부라도 인출된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 이에 대한 발

생이자 및 기타 금융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선언하는 통지를 차주에게 송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주에 의한 별도의 이행청구나 독촉 등의 조치없이 그 통지가 차주에게 도달함으로써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 다. 위 각 호 이외에도, 대주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의 발생으로 법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금융계약상 규정된 대주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 다.
- 라. 위 가.호 또는 나.호에 의하여 차주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대주는 차주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킬 수 있다.
- 마. 대주는 차주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제1항 가.호 및 마.호에 규정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제외)의 발생으로 인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러한 권리포기가 다른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나 후속하여 발생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대한 권리까지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 15 조 손해배상

## 제 1 항 분쟁 등 관련 손해배상

차주는, 대주 및 그 임원, 이사, 직원 및 대리인(각각 "피배상인")에게 금융계약의 체결, 교부, 이행과 관련한 제3자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청구, 소송, 집행, 기타 법적절차 등으로 인하여 피배상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부담하는 모든 손실, 손해, 비용, 수수료(법률비용을 포함한다)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 2 항 금융계약 위반 관련 손해배상

차주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의 발생 또는 차주의 금융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담보 권자가 입은 기타 모든 손실, 손해, 비용, 경비 등(대주가 대출을 위하여 조달한 자 금을 취소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포함함)을 배상하여 야 한다.

# 제 16 조 당사자의 변경

### 제 1 항 이 계약의 당사자

이 계약은 차주, 대주 그리고 그들 각자의 승계인 및 양수인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

### 제 2 항 차주의 변경

차주는 대주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금융계약상의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 제 3 항 대주의 변경

- 가. 대주는 차주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이 계약상 자신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차주는 그 양도 또는 이전이 유 효,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모든 협력(대출약정금의 양도에 대한 동의, 담보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나 그 승인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 는다)을 다하여야 한다.
- 나. 차주는 본조에 따른 대주의 권리, 의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양도일 현재 존재하는 상황에 기초하여, 차주가 그러한 양도가 없었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제 17 조 기타 조항

#### 제 1 항 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개시하여 ① 대출약정금의 인출없이 이 계약이 전부 해지되거나 취소되는 날 또는 ② 피담보채무가 전액 상환되고 대주가 차주에게 추가적인 대출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날에 종료한다.

#### 제 2 항 완전한 합의

이 계약은 이 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거래에 관한 이 계약의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최종적인 서면 의사표시로서 이 계약의 각 당사자들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이전에 있었던 당사자간의 모든 합의 또는 약정에 우선한다.

### 제 3 항 수정

이 계약의 수정, 변경, 개정이나 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 포기는 관련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 제 4 항 포기; 누적적 권리

대주가 차주에게 이 계약 조항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이를 지체하더라도 그러한 조항의 이행을 요구하는 권리에는 영향이 없으며, 그러한 권리의 일회적 또는 부분적 행사는 추가적 행사나 기타 권리, 권능 또는 구제수단의 행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이 계약이나 법에 의해 대주에게 부여된 각각의 권리, 권능 및 구제수단은 중복적이며 수시로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 제 5 항 비밀유지

- 가. 대주는 관련 법령 기타 정부 당국 및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및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등에 의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나 차주로부터 금융계약에 따라 수령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그 사본을 제3자에게 배포할 수 없고, 금융계약에 따른 거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주는 ① 금융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이러한 정보를 수령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본점, 지점, 감사, 임직원, 외부감사인, 기타 법령에 따라 정보를 얻을 자격이 있는 자 및 ② 대주의 양수인, 승계인 등 지위를 승계한 자 또는 승계하려는 자에게 비밀보장이 될 것을 조건으로 차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나. 차주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대주가 취득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상의 신용정보를 동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동의한다.

#### 제 6 항 일부무효 등

이 계약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 개의 조항이 법



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제 7 항 통지

가. 이 계약에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에 따른 모든 통지, 요구는 서면에 의하며, 관련 당사자에게 다음의 주소 또는 상대방이 오(5)일 이전에 지정하는 다른 주소로 발송하여야 한다.

## 차주에 대한 통지의 경우

와스카 유한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6(을지로2가)

참조: 조한형 과장

전화: 02-3770-5593

팩스: 02-3770-2686

전자우편: hanhyung.cho@yuantakorea.com

### 대주에 대한 통지의 경우

에스비케이와스카사모투자 합자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2길 37-2, 3층(소격동)

참조: 김영정 대표

전화: 02-3789-0015

팩스: 02-722-2230

전자우편: youngjung78@gmail.com, lifekey0@naver.com

나. 이 계약상의 통지는 ① 우편인 경우 직접 당해 주소에 송달된 때, ② 팩스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그 전송이 확인되는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통지가 송달되는 장소에서 위 송달간주일 또는 시간이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통지는 다음 영업일에 송달된 것으로 가주된다.

#### 제 8 항 상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피담보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대출만기일의 도래시 차주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대주는 차주에 대한 통지로써 차주의 예금 기타 대주가 차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그 만기에 불구하고 이 계약상 차주의 대주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수 있다.

### 제 9 항 준거법 및 관할법원

- 가. 이 계약 및 그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는 대한민국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 나.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 제 10 항 부본

이 계약은 수통의 부본으로 작성될 수 있다. 이 계약의 당사자들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개개의 부본은 완전한 원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다음 페이지에)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첫머리 기재 일자에 각자의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로 하여금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하였다. 편의 를 위하여 이 계약서의 간인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지정하는 자의 날인 또는 천공으로 갈음할 수 있다.

차주

와스카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6(을지로2가)

성명: 한동규 직위: 이사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첫머리 기재 일자에 각자의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로 하여금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하였다. 편의 를 위하여 이 계약서의 간인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지정하는 자의 날인 또는 천공으로 갈음할 수 있다.

대주

에스비케이와스카사모투자 합자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2길 37-2, 3층(소격동)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 에스비케이파트너스

성명: 김영정 직위: 대표이사



별첨 1.

# 분할상환일정표

분할상환일/ 이자지급일*	상환할 대출금(원)	대출이자(원)**
2023 년 5월 13일	4,000,000,000	1,735,180,770
2023 년 8월 13일		1,753,341,243
2023 년 11 월 13 일		1,753,341,243
2024년 2월 13일		1,753,341,243
2024년 5월 13일	4,100,000,000	1,710,538,721
2024 년 8월 13일		1,707,326,649
2024 년 11 월 13 일		1,707,326,649
2025 년 2월 13일		1,707,326,649
2025년 5월 13일	4,200,000,000	1,656,178,031
2025 년 8월 13일		1,669,659,051
2025 년 11 월 13 일		1,669,659,051
2026년 2월 13일		1,669,659,051
2026년 5월 13일	165,604,770,000	1,615,213,647

<sup>\*</sup> 분할상환일 및 이자지급일로 기재된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의미함.

<sup>\*\*</sup> 위 대출이자는 원천징수 전 금액임.

별첨 2.

수신: 에스비케이와스카사모투자 합자회사

# 인출요청서

년 월 역	5
-------	---

이 인출요청서는 2023년 2월 3일자로 차주로서 와스카 유한회사, 대주로서 귀사 사이에서 체결된 대출계약서("대출계약서")와 관련됩니다.

당사는 대출계약서 제3조에 따라 \_\_\_\_ 년 \_\_ 월 \_\_ 일("인출일")에 대출약정금 금 원을 인출하고자 하오니 위 금원을 당사 명의의 아래 계좌로 입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계좌개설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예금계좌번호: 100-910034-77404

당사는 이 인출요청서 작성일자 현재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1)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또는 잠재적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 (2) 금융계약상 당사의 모든 진술 및 보장사항은 현재 그 상황에 비추어 중요한 점에서 진실하고 정확하고,
- (3) 귀사로부터 달리 유예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 대출계약서 제3조 제3항에 따라 이 인 출요청서 작성일까지 충족되어야 하는 인출선행조건은 모두 충족되었으며,
- (4) 이 인출요청서에 따라 인출되는 대출금은 대출계약서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위에서 확인한 사항에 관하여 인출일까지 변경이 발생할 경우 당사는 이를 귀사에 서면 으로 통지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귀사가 그 때까지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 위 사항들이 인출일자 현재로 확인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인출요청서에 사용된 모 든 용어는 대출계약서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 와스카 유한회사

성명:	
-----	--

직위:

별첨 3.

# 인출선행조건 서류

아래 서류는 사본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의 경우에는 차주의 이사(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원본과의 동일성을 증명한 것이어야한다. 또한 아래 서류는 모두 대주가 합리적으로 만족할 만한 내용과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 1. 차주 관련 서류

- 가. 정관 사본
-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다. 법인인감증명서
- 라. 차주가 당사자인 금융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승인하는 차주의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 마. 차주의 이사(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차주가 당사 자인 금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리권에 관한 위임장 원본
- 바. 사원명부 사본

#### 2. 기존 거래계약 관련

- 가. 사채인수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각 사본
- 나. 기존 조건부 대여약정서 사본
- 다. TSA 계약서 사본
- 라. 본건 터미널 임대차계약서 등 제반 계약서 사본(차주,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부산항만공사 및 대상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4년 3월 10일자 '신항 2단계 2차 컨테이너부두 임대차계약 권리의무 포괄승계 및 연대보증에 관한 계약서' 및 차주,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PSA, 부산항만공사 및 대상회사 사이에 2016년 4월에 체결된 '계약상지위 양수도 계약서' 및 그 후 수정 또는 변경된 계약을 의미함)
- 마. 본건 터미널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 바. 대상회사의 주주인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및 PSA 로부터, 이 계약에 따라 대주 가 체결한 주식근질권설정계약 및/또는 사채근질권설정계약에 따른 담보권의

실행 및 이로 인한 대상주식 및/또는 대상사채의 양도 또는 매각에 대해서는 주주간계약상 대상주식 및/또는 대상사채의 양도 제한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및 PSA 의 확인서 (Confirmation Letter)

### 3. 금융계약 관련

- 가.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의 날인본 사본
  - 주식근질권 설정을 승인하는 대상회사의 이사회의사록 사본 포함
- 나. 예금채권근질권설정계약의 날인본 사본
- 다. 사채근질권설정계약의 날인본 사본

## 4. 기타

가. 대주가 합리적으로 만족할 만한 내용으로 작성된 차주 및 대주의 각 법률자문 사의 법률의견서 별첨 4.

# 인출후행조건 서류

아래 서류는 사본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의 경우에는 차주의 이사(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원본과의 동일성을 증명한 것이어야한다. 또한 아래 서류는 모두 대주가 합리적으로 만족할 만한 내용과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 1. 주식근질권설정계약과 관련하여, 인출일로부터 이(2)영업일 이내에,
  - 가. 대상주식에 대하여 담보권자가 근질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주권
  - 나. 대상주식에 대하여 담보권자가 근질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대상회사의 주주명 부 사본
  - 다. 처분승낙서, 양도증서, 위임장
  - 라. 기타 대상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을 위하여 대주가 그 제출을 요청하는 일체의 서류
- 2. 사채근질권설정계약과 관련하여, 인출일로부터 이(2)영업일 이내에
  - 가. 대상사채에 대하여 담보권자가 근질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채권
  - 나. 대상사채에 대하여 담보권자가 근질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대상회사의 사채원 부 사본
  - 다. 기타 대상사채에 대한 질권 설정을 위하여 대주가 그 제출을 요청하는 일체의 서류
- 3. 예금채권근질권설정계약과 관련하여, 인출일로부터 삼(3)영업일 이내에
  - 가. 배당금등수령계좌의 예금증서(통장)
  - 나. 예금채권근질권설정에 대한 배당금등수령계좌 개설은행의 승낙서 날인본(확정 일자 부)

